

이형주, 「18세기 후반 조일교섭 속의 재판차왜」 토론문

허지은

본 논문은 1796~1797년까지 서관 동대청동행랑 수리 문제로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공작미연한재판 가와치 도쿠자에몬(河內德左衛門)의 사례를 통해 조일간의 교섭석상에서의 재판의 역할과 입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재판 관련 기존연구를 통해 재판이 왜관에서 담당했던 업무, 교섭사안의 종류, 재판의 기원과 성립과정, 간사재판의 활동과 교섭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한 대로 재판과 관련하여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일간의 교섭석상에서의 재판의 역할과 입지에 대해 고찰한 본 논문은 재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

1. 본 논문에서 ‘18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와 ‘가와치 도쿠자에몬(河內德左衛門)’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1쪽 “양국 실무자들의 노력을 통한 관계의 유지 및 **재생산**이라는 부분에 주목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관계의 ‘재생산’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3. 3쪽 “재판이 수행하던 역할 중에는 재판이라는 직책 자체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있었다는 것일까”

“본 사례의 특징은 역대 관수를 통틀어서 가장 풍부한 경험이 있던 도다 다노모가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재판에 임명되어 조일교섭을 하게 된 가와치 도쿠자에몬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있다.”

→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조일관계 상에서 재판은 조일간의 외교업무 담당자로, 대관은 무역업무 담당자고, 그리고 관수가 왜관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기능은 ① 왜관 내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 ② 조일 양국 통교에 관한 의견 제안, ③ 조선 및 북경에 관한 정보수집 및 보고, ④ 東向寺에 조일간에 왕래하는 문서사본 기록의 지시 등 조일간의 왕복문서의 기록과 관리, ⑤ 왜관 안에서 근무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제재 및 관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판, 관수가 각각의 직책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수의 조일교섭 참여와 관련하여 1쪽에 도다 다노모가 “古館守로서 왜관에 몇 년간 더 체류하면서 역지통신 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역지통신 교섭의 시작은 1788년, 다노모의 재임관수 시기 쓰시마번주가 연빙사(통신사청퇴대차사) 平暢常을 조선에 보내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통신사 파견 연기를 요구한 데에서 부터입니다. 1791년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조선과 역지통신 교섭을 시작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도 平暢常이 의빙사(통신사의정대차사)로 조선에 파견되었고, 그는 3년간 왜관에 체류하며 역지통신 교섭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1793년 세 번째로 관수에 임명되었던 도다 다노모가 조선의 왜학역관과의 결탁을 도모하는 등 교섭 성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795년 재판 平暢常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쓰시마로 돌아간 후 보고를 받은 막부에서는 통신사청태대차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후 교섭은 네 번 째로 관수에 임명된 도다 다노모가 담당했고, 1802년부터 1805년까지 고관수 시절에는 통신사강정재판으로서 조선과의 교섭을 이끌었습니다. 재판의 부재 시 관수가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하긴 했지만 조선과의 외교교섭 담당자는 재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논문의 논지대로 재판 고유의 권한 부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논문 가운데 「18世紀の倭館における日朝交渉と対馬藩の裁判役」에 1607~1870의 역대 재판의 실명, 파견 명목, 왜관 체제기간 등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파견 명목 외에 업무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과의 교섭석상에서의 재판의 역할이나 재판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후 논문을 정리하실 때 재판의 성립 이후 각 재판의 파견명목과, 실제 수행임무, 조선 측과의 교섭 결과 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표가 제시된다면 재판의 역할과 입지, 성격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2쪽, 16쪽 “재판에게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도 그 직책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쓰시마 번에서는 이미 왜관에서 관수가 조일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선 측을 대변할지도 모르는데도, 조일교섭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지도 않은 藩士들까지 재판으로 임명하여 조일교섭에 투입하고 있던 것이다”

→ 밑줄 친 부분 내용과 관련하여 쓰시마번의 입장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11쪽 “재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해서 교섭을 진척시킬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동래부 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하며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

13쪽 <사료 9> “⑦당신이 재판이기 때문에 동래부사 및 임역(=양역)이 곤란해 처한 사정을 못 들은 것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 재판이라는 직책만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관수, 대관, 조선어통사 등 다른 직책의 경우 조선 측과의 교섭은 어땠었는지요. 조선과의 현안 교섭에 임할 때 관수와 재판 모두 조선과의 원활한 교섭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 도출이 목적. 이를 위해 둘은 논의를 통해 협업. <사료 9>의 내용은 관수와 재판 사이에서 조선과의 논의 과정에 대한 의견 대립의 내용.

현안과 교섭 상황에 따라 관수와 재판의 의견이 달라 대립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 이외의 다른 직책들의 교섭 양상을 비교해서 언급하시면 재판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 2장에서 교섭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고 3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두 장을 구분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는 편이 반복되는 느낌 없이 교섭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1쪽 : 각주 1) xiv쪽 → 숫자로 표기

4쪽: 쓰시마 번의 → 쓰시마번의

6쪽 : <사료 2> “상대방(=동래부 측)에게도 타격이 생긴다는 점에서 혹은 御用이 진행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쪽에도 큰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혹시) 일(御用)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도로 의역하면 어떨까요.

10쪽 : “가와치와 재판이 상의한 내용은” → 가와치와 관수가 상의한 내용은

13쪽 : ⑦ 당신이 재판이기 때문에 동래부사 및 임역(=양역)이 곤란해 처한 사정을 → 곤란에

신경미, 「17~18세기 조선 내 담배 전파와 일본산 담배의 유통」
토론문

장 순 순(전주대)

<논문의 의의>

- 전 세계적인 기호품인 담배의 조선 유입 경로와 시기 및 일본산 담배의 유통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연구로, 조선후기 생활사 및 조일간의 문화 교류의 양태를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발표자께서는 머리말에서 조선의 담배문화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를 그 연구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도 발표자의 향후 연구 방향 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질문 및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질문 및 논의 사항>

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장의 ‘조선 내 담배 전파 시기와 경로’에서 발표자는 다양한 문집 검토를 통해 필자는 1608~1609년 사이에 일본에서 재배된 담뱃잎 또는 가공품 형태의 담배가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전국에 퍼지는 데는 3~4년이 걸렸다고 보았다.(5쪽)
- 필자의 위 주장과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담배가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에 이미 문일평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온 바이다. 문일평은 임진왜란 후 왜관에서 조일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609년부터 『지봉유설』이 쓰인 1614년 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담배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이 부산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는 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이다.

2) 담배의 국내 유입 시기와 유입 형태에 대해서

- 필자는 담배의 국내 유입 시기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기유약조를 전후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담배의 전래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설이 있다. 첫째는 선조대(1568~1607)인 임진왜란 때 전래되었다는 설이다. 둘째는 1609년부터 1614년 사이에 전래되었다는 설, 셋째는 1618년 무렵에 전래되었다는 설이다. 모두 사료에 근거한 주장이다. 필자가 제시한 [표 1] 담배 전파 시기를 보면 안정복의 경우 『순암집』에서 ‘남초는 임진왜란 이후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필자는 전래 시기를 1592~1598년으로 추산하였다. 토론자도 선행 논문에서 담배의 국내 도입 시기가 기유약조를 전후한 시기라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임진왜란 때 전래되었을 개연성은 없을까?
- 담배가 유럽에서 필리핀 등을 통해 일본에 유입된 시기가 天文 연간설(天文12, 1543)과 慶長 연간설이 있다. 담배가 최근까지 우리나라 군대에 보급품으로 조달되었던 사실을 미뤄보면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군용물자로 유통되던 것

이 조선에 전래되었을 개연성은 없을까?

3) 전파 경로에 대해서

-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로에 대해서는 첫째,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설, 둘째,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설, 셋째는 위의 두 경로를 모두 생각할 수 있다는 설 등이 있으나, 뒤의 두 설은 증빙 문헌이 빈약하며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013, 31쪽).는 것이 선행 연구에 언급된 바이다.

- 논의의 여지가 있는 전파 경로를 본인의 주장으로 명확히 위해서는 둘째, 셋째 설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밝혀지고 규명되어야 기존 논문과 차별성이 부각될 것이다.

4) 필자는 5쪽에서 1608~1609년 사이에 일본에서 재배된 담뱃잎 또는 가공품 형태의 담배가 조선에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담뱃잎 형태의 유입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일본산 담배를 ‘기자미 다바코[刻みタバコ]’에서 유래한 ‘지삼(枝三)’이라 쓰고 ‘지사미’라고 불렀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실담배 내지 썬담배로 가공된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사미는 원래 잘게 썬 일본 담배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실담배, 썬담배, 쇠털담배, 찔담배, 씨레기 등이 있다. 지사미는 한자로는 ‘지삼(枝三)’이라 쓰고 ‘지사미’라 불렀다.

5)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위한 방안

- 3장 일본산 담배의 유행과 국산 담배의 발전에서는 필자도 머리말에서 “담배가 지닌 가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한 바 있듯이 3장에서는 일본산 담배가 조선사회에 끼친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나,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 방향과도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사적으로 담배는 단순히 입의 심심함을 달래는 단순한 기호품에 머물렀던 것만도 아니었다.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상징물이기도 했다. 담배는 그것을 피우는 사람의 의지와 신념을 드러내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의 상징이었던 서양에서 19세기 여성의 흡연은 여성 해방 운동의 상징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문화적 관점에서 담배는 단순한 작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흡연은 단순히 그 맛과 향을 즐기는 행위가 아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일본산 담배의 사회·문화적 의미,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발달 속에서 국산 담배의 발전에 끼친 영향 등, 일본산 담배의 유행과 그로 인한 국산 담배의 발전에 관한 구체상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의 고민이 좀 더 더해진다면 본 연구의 독창성과 의의가 배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 기타 오류

- 정인혁, 「담배 談論考」,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 일본어 역관 → 왜학역관

- 각주 7) 강홍중, 『동차록』 → 강홍중, 『동사록』

- 8쪽 인용문에서 ‘일용의 밑천으로’를 ‘하루 동안 사용하기 위함’으로 이해했는데, ‘날마다 쓰는’ 등으로 이해해야 할 듯

<일제의 식민지 조선 내 아동학대방지법 제정논의와 민족차별> 토론문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민지시기 아동학대방지법 제정논의를 다룬 본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공부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의 완성을 위해 보강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본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한 것이 1933년이고 이 법의 제정으로 조선에서도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조선의 움직임을 소년운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소년운동은 1920년대 활발하게 일어났고, 1931년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거의 활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930년대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요구를 1920년대의 소년운동의 흐름과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입니다. 1930년대에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던 조선인들은 어떤 이들인지 궁금합니다.

2. 서구나 일본에서 아동보호운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산업화에 따른 공장노동의 확산으로부터 비롯한 노동아동의 보호문제 그리고 전시의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라는 두 차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가 일본에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섞어서 서술하고 있는데, 양자는 그 주장이나 문제제기의 주체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에는 사회주의운동의 흐름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전시 인력동원이라는 총동원체제의 문제설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두 가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지요? 현재의 서술에서는 두 차원이 뒤섞여 있는데, 이 두가지 흐름을 갈래를 짓고 각각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2장에서 1919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동보호협의회에 참여한 나마에가 일본으로 돌아와 제기한 문제는 공장노동 아동에 관한 것은 아니라, 곡마단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 공장노동아동에 대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닐텐데(여공애사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왜 곡마단 아동학대 문제가 이렇게 주요한 문제로 부상했던 것인지 일본 사회의 맥락이 궁금합니다. 조선의 경우도 곡마단 아동학대 문제가 가시화 된 것은 없는지요? 9쪽의 1935년 조선총독부 조사에서는 곡마단 문제는 안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일지요? 그리고 '가요유예'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4. 3장에서 조선에서 소년운동이 나타난 배경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동보호 담론의 부상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선에서의 소년운동은 기본적으로 신문화운동의 일환이었고, 유교문화, 특히 장유유서 문화에 대한 비판 속에서 아동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아동을 제

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시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아동보호의 문제를 인식한 일제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소년운동에서 중심적인 문제제기가 일본과 달리 교육 문제에 집중되었던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일본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자 이 아동학대방지법 이슈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인들이 제기한 것은 아동학대의 방지가 아닌, 의무교육시설의 촉진, 교육기관의 아동 수용 능력 증진, 무산아동의 교육방침 수립 등이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선인들은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이슈를 조선인의 방식대로 전유하면서 식민지의 교육차별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제기했던 것이죠. 따라서 단지 일본 본토에서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을 식민지에 제정하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7쪽 부산 목도에서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 아동을 내쫓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내쫓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사실 보통학교 입학난으로 인해 입학하기 어려웠고, 특히 가난한 학생들은 입학했다 하더라도 수업료를 못내서 강제퇴학처분 당하는 경우가 흔했고 수업료를 제납한 학생들이 학대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인 교사이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목도의 사례를 아동보호의식의 확산이나 소년운동의 결과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표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교사의 조선인 아동학대 문제에 분노하는 민족적 공분의 발현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한데, 이런 일들은 예컨대 서리하는 조선아이들에 대한 사형(私刑) 사건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동보호 의식의 확산보다도 아동학대가 민족적 차별을 가시화하는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맥락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구호령의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구호의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호령을 아동학대방지법과 모자보호법을 아우르는 법령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입니다. 그냥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7. 구호법, 모자보호법, 아동학대방지법, 소년법, 소년교호법 등을 1930년대부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다고 말만 하고 결국 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10쪽), 소년법, 소년교호법은 조선에서 1942년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령 등은 사실상 불량아동·불량아동에 대한 격리와 사실상 처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도 겉으로는 ‘아동보호’를 표방했지요. 따라서 일제가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들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설명 역시 좀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했던 일제가 이를 조선에 제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조선인을 기만한 것이라는 결론은 다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방지 담론이 부상하게 되는 서로 다른 계기들(서구, 일본, 식민지 조선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러한 담론과 실천의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차하는지를 드러내며 논문의 주장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